

인천 부평구 부개역 코오롱하늘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규모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개동 120-80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총 526세대 중 일반공급 306세대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1층~지상 24층,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 : 총 306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 : 28세대)

(단위 : 세대)

타입(전용면적)	주택형	배정 세대수	계
31.9340	31	3	28
59.8972	59A	3	
59.9611	59B	6	
59.9812	59C	3	
74.4387	74	8	
84.9579	84A	2	
84.9459	84B	3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면적 및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시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에 거주 공급 신청자 중 선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을 말한다) 제외(철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가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 신청자
 -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특별공급 일정 및 선정 방법

■ 공급일정

구분	일자	장소
입주자 모집공고일(예정)	2019. 5. 22(수)	-
신청일자(예정)	2019. 5. 27(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사업주체 건본주택
당첨자 발표(예정)	2019. 6. 4(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사업주체 건본주택
계약 체결(예정)	2019. 6. 17(월) ~ 2019. 6. 19(수) [3일간 10:00 ~ 16:00]	사업주체 건본주택

- 상가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신청 접수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당사 건본주택에서만 방문 접수 가능)
- 계약체결은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
- 당첨 동·호수 확인 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단,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기관 별 순위 선정 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 신청하여야 함.(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당사 건본주택에서 방문 접수 가능)
 - 동·호수 추천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특별공급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함.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점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의 40%이상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 공급 세대수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함.(일반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
- 해당 주택의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되었을 시 먼저 분양 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상실됨.
-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점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불가)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관계 법령에 의거 공급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구비서류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은 APT2you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함.

(단,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동의확인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이 추천한 추천명단 또는 추천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	위임장	청약신청자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청약신청자)	청약신청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2매)
		○	인장, 신분증(대리인)	대리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5. 건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 사항

위치도	건본주택 위치
	문의전화 : 1800-0353  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80번지 일원 건본주택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227 일원